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3109 |
|----------|------|

2022년 3월 28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3월 10일, 송재혁 의원 외 18명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16일
다. 상정일자: 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년 3월 2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혁 의원)

- 가. 제안이유
-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의 추천 권한은 구의회에 있으나 추천 절차에 정해진 방법이 없어 주민 갈등 발생 및 추천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1항).
-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이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의 추천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바, 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4조제1항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주체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특히,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사유¹⁾로 인해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제2항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이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현재 관내 자원회수시설 중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선임이 필요한 시설은 노원, 강남, 양천 시설이며, 이 중 노원과 양천 시설은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²⁾, 지역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아파트 자치규약, 정관 등을 근거로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 간의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동 조항의 신설을 통해 주민대표 추천 절차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협의체의 원활한 구성과 안정적인 지역주민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1) 양천: 주민들과 구(의회) 간의 대립으로 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이 지연되고 있음.

노원: 전임 위원들과 신규 위원들의 갈등으로 민원 및 소송 발생한 바 있음.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양천주민지원협의체

| ① 지역주민, 제11기 협의체 위원 위촉 건으로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 | |
|---|---|
| 사건명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처분 취소('19.9. 소 제기) |
| 원고/피고 | “이00” 외 5명/서울특별시장 |
| 주 장 | “이00”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권고 의결을 받아 불신임된 자이므로 위원 자격 없음에도 피고가 “이00”를 위촉한 것은 위법함 |
| 판 결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20.5. 판결선고). - 내용: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00”를 사퇴 권고한 결의는 아파트 자치규약에 불과하며, “이00”는 폐촉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 |
| ② 절차 미비에 따른 주민과 양천구(의회) 간 대립으로 협의체 위원 추천 지연 | |
| 내 용 | - 주민대표 추천 과정에 정해진 절차가 없어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양천구(의회)의 후보자 추천(2배수, 10명) 요청에 대해 미달 제시 또는 불복 중 ▶ 한신청구: 지원자가 없어 미달 제시(8명) ▶ 목동1단지: 불복하여 1배수만 제시(5명) - 양천구(의회)에 제12기 위원 추천 요청을 3차례 실시('21.5./'21.9./'21.12.)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11기 임기를 임시 연장 중 ▶ 제11기 임기: '19.07.~'21.07.(2년) → '19.07.~제12기 구성 시까지 |

□ 노원주민지원협의체

| ① 협의체 위원 선출 절차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제11기·12기 간 민원 및 소송 | |
|--|--|
| 내 용 | - 11기 위원이 12기 대책위원 선출 관련하여 정관 제4조제2항 적용으로 협의체 위원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노원구의회에 민원 제기('17.8.) ▶ (정관) 각 단지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 자격이 없는 자는 대책위원이 될 수 없다. - 협의체 후보자 추천에 대한 11·12기 간 의견 대립으로 노원구의회에 의견 제출('17.9.) ▶ (제11기) 재공고 및 재선거를 통해 제12기 협의체 위원 후보자 다시 선출 ▶ (제12기) 제12기 대책위원 투표로 선출된 제12기 협의체 위원 후보자를 市로 추천 요청 - 대책위원 투표로 선출된 제12기 위원(안00)이 제11기 협의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주문내용)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탁00(11기 부위원장)은 법정직무 외 직무를 집행하면 안된다. - 운영대책위원 등 선출절차 적법확인 의 소 (최종판결, '19.7) ▶ (판결내용) 원고(안00)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안00 승) |
| ② 절차 미비에 따라 협의체 위원 선출시 절차 관련 민원 등으로 위원 추천 지연 | |
| 내 용 | - 위원 선출의 절차 관련 민원, 소규모 단지의 위원 배분 문제 미해결 등으로 노원 구의회에서 제13기 협의체 위원 추천 안건을 부결함('21.10.) - 노원구(의회)에 제13기 위원 추천 요청 및 소통(의원 면담, 주민설명회 개최) 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체 공석으로 비상 운영 중 ▶ 제12기 임기 : '19.09.23.~'21.09.22.(2년)/현재 임기 만료되어 협의체 공석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을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를 법 제17조의2제1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과 자치구의회의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 ②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구의회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 계획의 수립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나 지침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신상변동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을 “신상 변동으로 자격을 잃거나 사임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 <u><신 설></u></p> <p>①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은 해당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u>신상변동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u> 영 제18조 제1항 별표 2의 위촉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30일 이내에 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 <p>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를 법 제17조의2제1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과 자치구의회의 협의회하여 구성한다.</p> <p>②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구의회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 계획의 수립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나 지침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p> <p>③ ----- ----- 신상 변동으로 자격을 잃거나 사임한 경우, ----- ----- ----- -----.</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혁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3109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 송재혁, 김기대, 김기덕,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박기열, 박순규, 송도호,
송아량,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이영실, 임종국,
전병주, 전석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의 추천 권한은 구의회에 있으나 추천 절차에 정해진 방법이 없어 주민 갈등 발생 및 추천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1항)
- 나.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이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을“(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를 법 제17조의2제1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과 자치구의회의 협의회 구성한다.
- ②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구의회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 계획의 수립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나 지침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신상변동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을 “신상 변동으로 자격을 잃거나 사임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p> <p><u><신 설></u></p> <p>①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은 해당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u>신상변동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u> 영 제18조 제1항 별표 2의 위촉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 <p>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를 법 제17조의2제1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과 자치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p> <p>②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구의회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 계획의 수립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나 지침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p> <p>③ ----- ----- 신상 변동으로 자격을 잃거나 사임한 경우, ----- ----- ----- -----.</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